



國民속에 뿌리내리는 環境政策

安基熙 / 本協會 개발부장 · 行博

오늘날 국민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공기, 물 등
의 環境欲求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휴일이면 도심지 근교의 大小公園은 물
론, 山과 들 그리고 江을 찾아 자연환경요소를
만끽 하려는 시민들로 대만원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제주도나 울릉도
그리고 설악산, 지리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
하며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
면 서울·부산, 대구·광주, 인천 등지에서 사는
시민들은 그들의 공기나 물 오염, 소음 등으로 생
활환경이 점점 악화일로에 있다고 믿고 있다. 그
만큼 도시민은 이제 답답한 도심지를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當面課題는 生活環境을 어
떻게 쾌적하도록 개선하고 창조하느냐 하는 것이다.
즉, 우리들의 관심은, 우리들의 生活環境은
물론 自然環境에 이르기까지 生活의側면에서 쾌
적하도록 增進하는데 있다.

이러한 國民들의 環境欲求를 실현하려는 최근

環境廳의 노력은 이제 서서히 國民속에 뿌리를 내
리고 있다.

그러한 일례는 모든 政策을 새롭게 변신하려는
제 6 공화국의 환경청 고위직 人事面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기존의 環境政策을
인정하고 지속적인 環境保全의 배려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즉, 지금까지 혁신적으로
環境行政을 주관해온 環境廳長이 재임명되고, 環境
次長이 保社部 次官으로 영전되었으며, 環境廳
창설부터 環境行政의 기반을 구축해온 서울支廳
長이 현 環境廳次長으로 승진된 사실이다. 뛰어
어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 승진되는 대내외적으로
일대 경사를 맞고 있는 셈이다.

사실 지난 몇년간의 環境政策은 개발우선의 논
리에 밀린 피나는 노력이었다. 그런데 최근들어
환경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나 피부로나 직접 느
낄 정도로 環境政策의 다양한 실현이 신문지상에
서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環境政策이 우선 國民속에 정착되기 까
지의 이면에는 경제성장 일변도의 거대한 貫性
의 두터운 벽에 도전한 環境行政官으로서의 創



意의인 힘겨운 노력이 있었으리라!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기업인은 물론 정부고위직 관료속에서는 대부분이 경제성장의 신념을 신학적으로 믿고 있다. 環境政策이 새롭게 탄생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기준의 힘을 허무는 작업이다. 아니 올바로 잡는다는 논리가 더 적합할지 모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環境政策의 進前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제 1 단계는 1962년부터 1971까지의 시기이다. 사실 1960년대에 우리들은 가난과 빚주림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봄부림의 때였다. 1963년부터 公害防止法은 제정되었으나 이 법을 시행한 것은 1960년대 말이었다. 그만큼 國家的 최우선 과제는 經濟成長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시기의 開發計劃은 전체로서의 人口 및 社會에 대한 生態學的 영향은 거의 고려되지 않은 채 집행되었다. 더군다나 地方自治團體는 다투어 자기 지역에 더 많은 공장을 유치하려고 열중한 시기였다. 그만큼 환경문제는 뒷전이었다.

제 2 단계는 1971년부터 1976년까지의 환경보전의 의식이 산발적으로 일어난 시기이다.

產業構造의 근대화와 도시화의 급속화는 울산공단을 비롯해서 산발적으로 공해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서 公害防止法을 개정강화한 정책의 시기였다. 그러나 이 단계 역시 강력한 경제개발의 우선 정책으로 環境政策은 뒷전으로 밀려난 역부족의 시기였다. 이 때 유명한 미국의 미래학자 「허만 칸」은 우리나라에 2번이나 초청되어 와서 「한국의 환경문제는 경제성장을 하고난 다음에 다스려도 늦지 않다」는 개발우선 정책에 합리화 하는 유명한 발언을 하였다.

제 3 단계는 1977년부터 1985년까지이다.

1977년에는 사후피해방지 차원의 公害防止法이 전면 폐지되는 대신 사전예방과 국토의 사전관리라는 차원의 협행 環境保全法이 탄생되었다. 이 法에는 종래까지 전혀 느낄 수 없었던 환경 그 자체의 기초인 環境基準制와 環境影響評價制를導入하였다. 그리고 汚染負擔原則을法制화하기로 했다. 특히 개발에 앞서 이로운 영향과 해로

운 영향을 사전에 배려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에 있어 큰 부담이 되는 새로운 제도의 출발이었다.

위와같은 환경의 사전 배려인 제도는 1978년 자연보호현장을 선포하면서 그당시까지 금기사항으로 되었던 환경문제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리고 1980년대초 박대통령은 環境行政을 체계적으로 주관할 환경청의 신설을 내각에 지시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전환의 의지는 1980년 제3공화국 헌법에 환경권이 명문화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즉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속에 명문화된 환경권의 이념은 결국 환경행정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環境廳을 창설하게 이르렀다. 이때부터 환경이념은 서서히 국민속에 새롭게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국·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환경기구의 창설은 기존의 개발부서 업무에 밀려 제대로 국민속에 뿌리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환경기준의 정립,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착화등 환경정책추진을 위한 긴 준비기간이 필요한 시기였다.

끝으로 제 4 단계는 1986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단계이다. 이 시기는 한마디로 環境政策의 일대 轉換期를 맞이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環境廳은 특히 1986년 기준의 행정구역에도 불구하고 大氣의 영향권별, 水質의 水系別管理를 위한 전국 6개支廳과 1개 출장소를 대폭 신설하고, 본청 기능도 폐기물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폐기물 관리국」을 신설하는 한편 「종합계획국」을 「환경정책국」으로 개편하는등의 環境政策의 비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國立環境研究所」를 「國立環境研究院」으로 格上하는 일대 組織強化에 들어간 시기이다. 이것은 유사 타 부처가 현재까지 支廳을 이사관급으로 개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가히 혁신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廳」이라기 보다는 「部」 단위의 하부조직을 모두 확보한 셈이 되었다.



그리고 6개지청의 업무와 맞물린 환경기준시설의 체계적·전문적 설치·관리를 위하여 環境管理公團의 업무기능도 전국적 규모로 확대 개편하였다.

또한 폐기물관리국의 신설과 폐기물의 대량화에 업무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한국 자원재생공사의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활성화로 자원화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한편 環境保全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조성으로 민간 환경투자의 활성화에 적극 이바지 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종래의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까지 확대실시함으로써 민간개발의 대형화에 따른 환경파괴와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리고 도심지의 대기오염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를 생산토록 조치 함으로써 국민건강은 물론 세계적인 대체적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 뿐 아니다. 수도권 쓰레기 문제의 근원적 관리를 위하여 대단위 해안매립지를 확보함으로써 폐기물의 광역처리 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또한 공단폐수 종말처리장등의 기초시설에 지속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산업화에 따른 하천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종 環境政策의 추진은 종래와 같은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주민 개인으로 하여금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케 함으로써 스스로 환경보전에 동참하는 분위기로 정착하는 쌍방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대대적인 홍보·계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같은 홍보·계도 활동은 개개인의 환경요소가 바로 자기 자신의 건강과 지역 환경보전에 필수적이라는데 그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기능은 지금까지 민간운동의 차원에서 범국민 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환경보전협회의 홍보기능과 합일되어 민간, 기업 및 정부의 공동연대의 일체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1988.2.25 공포된 제 6 공화국 헌법에

는 환경권이 주택환경으로까지 확대되어 폐적한 환경보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권의 확대에 따라 오늘날 대부분의 국민들이 영상매체를 이용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TV·라디오는 물론 신문·잡지와 스크리드·팝플랫·환경노래, 각종 세미나, 캠페인 등으로 환경권의식을 제고하고 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의 전면 개편은 물론 사회교육과 환경교육을 연계시킴으로써 ① 개개인이 자기자신의 활동은 하나의 건전한 환경을 보전하는 규범에 순응 시킬 수 있고, ② 개개인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고 참여하게 되며 따라서 지방이나 국가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증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환경과학연구협의회설립과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한미 환경 보전 기본 조약' 체결이다. 이러한 환경전문인의 상호협력 증진은 환경문제를 종합적·체계적·전체적으로 접근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요체는 국민이 원하는 政策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環境政策도 새로운 국민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절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맑은 공기와 청정한 물, 그리고 깨끗한 토양에서 나오는 영양소를 공급하는 신선한 環境政策이야말로 제 6 공화국의 새로운 변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前提가 필요하다. 우선 이제 남은 일은 이미 部단위만큼이나 조직된 環境廳을 환경행정의 종합조정권 등을 위해 '環境部'로 확대 개편하는 일이다.

다음은 국가환경정책의 전환을 위하여 環境政策基本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끝으로 남북한의 교류 및 통일로의 동질성의 접근을 위한 남북한 최고환경회담을 제의하는 바이다. 이미 동서독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 환경협정을 맺고 있다는 사실은 남의 일이 아니며, 환경문제는 정치와 체제, 이념을 초월한 상위 개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